

내 부 감 사 보 고 서

(별지 제1호 서식)

감 사 보 고 서

교육부 장관 귀하 학교법인 서정학원 이사회 귀중

사립학교법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41조에 의하여, 학교법인 서정학원(서정대학교)의 2023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학교법인 서정학원(서정대학교)의 재산상황·회계와 이사회 의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 지적사항 내용

구 분	재산·회계감사 지적사항		이사회 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건)	비고 <지적사항 없는 경우 : 지적사항 없음(표기)>
	건수	금 액		
1. 법인 일반업무 관련	-	-	-	지적사항 없음
2. 법인 수익사업 관련	-	-	-	지적사항 없음
3. 학교 관련	-	-	-	지적사항 없음
4. 부속병원 관련	-	-	-	지적사항 없음
계	-	-	-	

붙임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1조에 의거 작성하는 내부 감사보고서

2024 년 5 월 일

학교법인 서정학원

감 사 이 해 준

감 사 김지식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 8188 호)

※ 공인회계사를 선임한 대학에 한하여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기재

피감사 기관장

2024 년 5 월 일

피감사 기관장

2024 년 5 월 일

학교법인 서정학원 이사장 (인)

서정대학교 총장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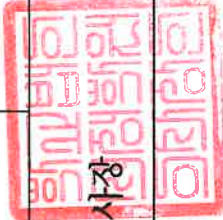
(별지 제1의1호 서식)

학교법인 서정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

(회계연도 : 2023년 03월 01일부터 2024년 02월 29일까지)

· 지적사항(내용) : 지적사항 없음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 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붙임)	
피감사기관장 학교법인 서정학원 이사장	



(법인 일반업무회계 · 수익사업회계)

(별지 제1의2호 서식)

서정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 (회계연도 : 2023년 03월 01일부터 2024년 02월 29일까지) · 지적사항(내용) : 지적사항 없음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폐감사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분함)			
폐감사기관장		서정대학교 총장	

(교비회계 · 부속병원회계)

사학기관 재산상황·회계전반에 대한 감사 중점 확인사항			
감사 분야	감사 확인사항(지적사항 유형)	근거 법령 및 참고사항	
1. 기본적 사항 (재무제표신뢰성검증) 법인일반업무회계 법인수익사업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재무제표가 사학기관 채무·회계 규칙 또는 사학기관 채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매년 통보한 「사립대학 예산편성 유의사항」 •매년 통보한 「사립대학 결산 유의사항」	
2. 공통사항 (재산·회계감사) 법인일반업무회계 법인수익사업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1. 예산집행의 타당성과 채무상태 및 운영성과의 적정성 여부 2. 수입금의 직접사용 여부 3.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4. 예산 성립전 예산의 집행 여부 5. 자금예산의 초과지출 여부 6. 예·결산의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여부 7. 예산을 전용한 경우 이사회에 보고 여부 8. 대손상각등(회수불가능 부실채권 또는 사용 불가능 고정자산등 폐기)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여부 9. 계약업무(공사·제조·구매·용역·임대차)의 적정 여부 10. 차입금의 이사회 의결 및 관할청 허가 여부 11. 기채 자금이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12. 일시차입(1년)의 당해연도 상환 여부 13.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 제공 또는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시 이사회 의결 및 관할청의 허가(신고) 여부 14. 재산 취득시 등기·등록 등 권리 확보 여부 15. 재산 처분시 처분대금 완납 이전 당해 재산 소유권 이전 여부 16.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의 매도·담보 제공 여부 17. 전년도 지적사항 시정 여부 18. 기타 중요한 지적사항 19. 기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감사 사항	•매년 통보한 「사립대학 결산 유의사항」 •사학기관채무·회계규칙 제6조 •사학기관채무·회계규칙 제21조 •사학기관채무·회계규칙 제20조 •사학기관채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제12조 •사립학교법 제29조제4항, 제31조제3항 •사학기관채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제13조제2항 •사학기관채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제32조 •사학기관채무·회계규칙 제35조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사학기관채무·회계규칙 제8조 •사학기관채무·회계규칙 제8조 •사립학교법 제16조제1항, 제2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1조 •사학기관채무·회계규칙 제44조 •사학기관채무·회계규칙 제46조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2조	

(별지 제1의3호 서식) - 계속

감사 분야	감사 확인사항(지적사항 유형)	근거 법령 및 참고사항
3.법인일반업무회계 또는 수익사업회계	-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 및 수익금의 학교 전출 여부 - 법정기준(연간 학교회계운영수익총액) 확보 여부 - 법정 수익률(3.5%) 충족 여부 - 법정 부담률(80%) 준수 여부 - 수익용 기본재산(현금)의 유용·횡령 여부 - 수익성 있는 재산으로 수익용기본재산 관리 여부 - 수익성 결여 원인 확인 등 -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대절차 및 임대료 관리 적정 여부 - 임대계약서 작성, 임대료 산정 등 - 수익사업회계와 타 회계의 구분 여부 - 비상근 임원에게 보수 등 지급 여부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조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조 - 매년 통보한 「사립대학 예산편성 유의사항」 - 사립학교법 제6조제4항 - 사립학교법 제26조
4. 교비회계	- 등록금선수금의 회계연도 개시 전 사용 여부 - 국고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 연구비(정부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 교육용기본재산을 이용한 수익사업실적 여부 - 등록금 수입통장의 관리 및 수납(즉시 금 용기관 예치 등)의 적정성 여부 -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지 여부 - 관할청 승인 없이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을 교비회계에서 부담하였는지 여부	- 매년 통보한 「사립대학 예산편성 유의사항」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 학술진흥법 제17조 - 사립학교법 제6조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7조 - 고등교육법 제11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5. 부속병원회계	- 해외여행 등 부재중인 교수의 선택진료비 징수 여부 - 불요불급한 의료장비 구입 후 미 활용 방지 여부 - 지급근거 없는 진료자문위원수당 지급여부 - 학구용환자 지정 적정여부 - 의료수가의 적용 적정여부 - 임상교원 인건비를 법인일반회계를 경유하여 대학으로 전출하는지 여부 - 부속병원의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대입하는지 여부	- 선택진료비 징수 현황 - 의료장비 현황 - 진료자문위원수당 지급 현황 - 학구용환자 지정 현황 - 의료기관 재무제표 세부작성 방법 - 사립학교법 제29조

(별지 제1의4호 서식)

법인 이사회 운영 및 업무진반에 대한 감사 중점 확인사항			
감사 분야	감사 확인사항(지적사항 유형)	근거 법령 및 참고사항	
1. 기본적 사항 법인일반업무관련 수익사업 관련 학교업무 관련 부속병원 관련	1. 이사회 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 이사회 의 운영과 그 업무의 범위 :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 의 기능)제1항 2. 업무감사 :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법인과 대학관련 법령·규정 및 해당 법인의 정관, 학칙 등 제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의 적법성과 합목적성 및 효율성 여부 감사	•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제2호 • 매년 통보한 「사립대학 예산편성 유의사항」 • 매년 통보한 「사립대학 결산 유의사항」	
2. 공통사항 법인일반업무 관련 수익사업 관련 학교운영 관련 부속병원 관련	1. 내부통제의 취약점 또는 개선점 2. 학교법인 정관에 없는 임의기구 설치 여부 3. 전년도 감리지적사항 시정 여부 4. 기타 중요한 지적사항 5. 기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감사사항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제1항. 정관	
3. 법인일반업무 관련	• 이사회 의 운영 사항 1. 이사회 소집 통지기간 준수 여부 2. 이사회 시 제척사유 해당자의 의결참여 여부 3. 이사회 소집목적에 명시되지 아니한 의안의 의결 여부 4. 이사회 개최 및 의결 시 정족수 충족 여부 5. 이사장 사고 또는 결위 시 직무대행 선임 적정 여부	• 사립학교법 제17조 • 사립학교법 제16조제2항 • 사립학교법 제17조제3항 • 사립학교법 제18조.제45조. 정관 • 사립학교법 제19조제2항	
4. 수익사업 관련	1. 수익사업의 공고 여부 2. 수익사업의 학교교육 저해 여부	• 사립학교법 제6조제3항 • 사립학교법 제6조제1항	
5. 학교운영 관련	1. 학교장 및 교원 임면 절차의 합법성 여부(공개 채용, 주요일간지등에 공고 등) ※ 교원임면에 관한 간섭이 아니고, 행정절차만 감사대상임 2. 기타 학교 운영과 관련된 이사회 심의안건의 절차 등 합법성 여부	• 학교장 및 교원임면의 심의·의결권은 이사회 기능(사립학교법 제16조제1항제5호)이고,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는 내부감사인의 감사대상임(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제2호) •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 및 정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감사보고서

학교법인 서정학원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
에 의하여 학교법인 서정학원 (서정대학교)의 2023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24년 02월 29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
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학교법인 서정학원(서정대학교)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서정학원 (서정대학교)의 2024년 02월 29일 현재
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24 년 05 월 일

학교법인 서정학원

감사

이 해 준

감사

7/26/24

파감사자 (임회인)

직명

사무국장

성명

김 현 재